# 학생자치구조와원리

@2019.01.31 Leadership Training

김영훈(총신대학교 # 2017111011)

## 총학생회 구성도



정·부총학생회장 재정국 홍보국 영성국 졸업준비위원회

학생복지위원회

축제준비위원회

내터준비위원회

운영위원회

### 학생자치회칙

- 회칙 해석법
  - 1. 일단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! ~한다 vs ~할 수 있다
  - 2.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. 연동되는 조항
  - 3. 회칙의 문자적 의미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. 정치적 의미
- 유권해석
  - 1. 첫째는 회칙에 따르고,
  - 2. 둘쨰로 관습에 따르고,
  - 3. 셋째로 조례를 따릅니다. 사회법

### 1장 총칙

- 제5조: '징계 처분에 있는 자'는 제적자를 의미합니다.
- 제7조: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등록금조정위원회, 평의원회, 입찰 등, (+총장추천위원회)에 참석합니다.
- 제9조: 회칙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, 이는 또한 의결권 순서이기도 합니다. 해당 내용은 한국 헌법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.

### 2장 학생총회

- 제12조 제4항: "안건"만을 확정, 의결합니다. 이와 같이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17장 보칙 제90조에 의거 대의원총회에서 심사 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.
- 제13조: 제2항과, 제3항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!
- 제15조 제1항: 이는 또한 적어도 3일 전까지는 안건을 공표해서, 회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
- 제15조 제2항: 개회의 반대말은 폐회입니다. 모든 진행 과정에서 회원 1/6의 출석(정족수)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회할 수 없습니다.

#### 3장 대의원총회

- 제18조 제3항: 대의원회와 대의원총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 대의원회는 각 학과 내의 대의원회(i.e. 신학과 대의원회)가 되고, 대의원총회는 모든 대의원들이 모여 대의원총회가 됩니다.
- 제18조 제5항: 총학생회장단이 부재한 비상특별위원회의 상황에서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의원총회 의장이(부재한) 총학생회장 대리의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.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, 비상특별위원회는 이름 그래도 비상시이기 때문입니다. 이 때에는 일반적인 학생회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#### 3장 대의원총회

- 제20조 제5항: 이 조항은 대의원총회가 가진 감사권의 근간이 됩니다.
- 제20조 제6항: 총학생회라 함은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새터준비위원회 등 역시 학생 경비가 사용되었느냐에 관계 없이 총학생회 예산으로 잡힙니다.
- 제20조 제9항: 대의원총회 의장단 탄핵 결의권은 대의원총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.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제20조 제10항: 대의원총회는 총학생회장단의 불신임투표를 열 것인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20조 제11항: 여기서 부장이라 함은 국장급을 의미합니다.

### 4장 상임위원회

- 상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
  다뤄야 하는 안건이 너무 많은 경우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,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안건을 선정합니다.
- 각 대의원과 마찬가지로, 대의원총회의 상임위원이 아니라, 각학과의 상임위원입니다.

#### 5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

- 제31조 제5항: '본회'는 언제나 그렇듯 총학생회 집행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- 제31조 제11항: 총학생회장은 회칙이 개정되었으면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.

### 제6장 운영위원회

- 제35조 제1항: 총학생회비는 학생경비를 의미합니다.
- 제35조 제3항: 각 학과와 기구 별로 학생경비를 어느정도 비율로 가져갈 것인지 상의하셔야 합니다.
- 제35조 제4항: 결산보고서를 검토해 주신 후 대의원총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- 제35조 제5항: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불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회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, 이를 거부하려면 대의원총회는 명분과 설명을 해야 합니다. 이 조항 뿐만이 아니라 학생자치회칙의 모든 조항은 이런 식의 정치적 맥락을 암시합니다.

### 제6장 운영위원회

- 제35조의 다른 업무 및 권한들 역시 꼭 반드시 숙지해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.
- 제35조 제15항: 최근에는 책걸상 교체와 전자출결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.

### 제7장 집행부

- 일반적으로 말하는 "총학"은 바로 이 총학생회 집행부를 의미합니다.
- 제40조 제6항: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.

### 제13장 제정

- 제68조 제2항: 학생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어 사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제70조 제2항: 화이팅!
- 제70조 제3항: 부득이한 사유는 대개 사업의 추가를 의미합니다.
  예를 들어 총티드를 두 번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- 제70조 제4항: 2018년 2학기 결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과 및 기구는 완료될 때 까지 2019년 1학기 학생경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- ✓ 총여학생회의 구성 인원은 몇 명일까요?
  - 1. 0명
  - 2. 1명
  - 3. 2명~100명
  - 4. 101명 이상

- ✓ 총학생회의 구성 인원은 몇 명일까요?
  - 1. 20명 이하
  - 2. 20명~60명
  - 3. 61명~150명
  - 4. 151명 이상

- ✓ 정기총회 도중 회원 몇 명이 나가 정족수가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  - 1. 학칙에 의거 1/6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였음으로 계속 진행하여도 괜찮다.
  - 2. 계속 진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의결은 할 수 없다.
  - 3. 총회를 즉시 중단하고, 계속해서 정족수가 미달할 시 폐회하여야 한다.

- ✔ 총학생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나요?
  - 1.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사업 전반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기구이다.
  - 2. 운영위원회는 사업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.
  - 3. 몰래 하면 괜찮다

- √등록금을 내지 못해 졸업을 못 할것 같은 학우에게 공금을 개인차용금으로 지원해줘도 될까요?
  - 1. 추후에 돌려받을 것이며,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.
  - 2. 사전에 회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- 3. 회원들의 허락을 사전에 받고, 대의원총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승인을 얻어내어야 한다.
  - 4. 어떤 경우에도 지원해주면 안 된다.

# 회계 감사

• 감사 일정

#### 자주 발생하는 실수

- 인준된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영수증을 위조하면 안 됩니다.
- 학교 지원금을 나눠 가지면 안 됩니다.
- 학생회비가 쓰이지 않았더라도 학회 사업은 감사 대상입니다.
- 회계 책임자는 회계 뿐만이 아니라 학생회장도 포함됩니다.
- 직전 학기 결산 미인준 시 해당 학기 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.
- 예결산감사 때에는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.

#### Summery

- 영수증을 잘 챙기고
- 감사 일정에 맞춰 구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만 하면
- 완벽합니다!